

보 도 해 명 자 료

(15.12.08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해외서 돌아오랄뎨 언제고 유턴기업의 눈물, 정부
지원 늦어져 회사 부도(15.12.8. 한국경제)

1. 기사내용

□ 일부 복귀기업이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제때 받지 못해 유턴을 포기하거나, 경영 애로에 직면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□ 정부는 해외로부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(유턴기업)을 지원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」 고시(이하 “보조금 고시”)에 따라 입지 및 설비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,

- 동 고시(제21조)에 따르면, 지자체는 기업이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하기 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, 담보가 확보된 이후에는 보조금을 즉시 지급토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
【참고】 보조금 고시 관련 규정

제21조(보조금 집행)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수령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,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□ 동 기사에서 사례 기업들의 경우, 기업 자체의 가용 자산 부족으로 담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사례이거나,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받지 못할 상태여서 별도의 예치금이 필요했던 사례임

- 또한, 보조금과 별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상당액의 정책자금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, 유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는다고 보기는 어려움.

□ 최근 세계 경기침체로, 재무적 취약기업의 경우 국내로 복귀 하더라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임.

- 일부 기업의 경우, 산업부 및 해당 지자체는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였으나, 담보력이 미흡한 개별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은 안타깝게도 어려웠던 사례임.

□ 향후 산업부는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투자 인센티브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생력을 갖춘 유망 기업의 유턴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.

- '13.12월 유턴법 시행으로 유턴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를 정비하고, 유턴기업 선정 절차 간소화, 제출 서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,
 - 향후에도 제도 운영과정에서 중복서류 등은 지속 정비하여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, 신속한 투자를 지원할 계획임
- 또한, 기업 스스로 국내외 경영환경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턴 전후 경영수익 비교, 국내복귀이후 경쟁력 진단 등 사전 투자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임.

※ 관련문의

산업통상자원부 : 해외투자과장 박진서(044-203-4090) 사무관 김민혜(4093)
지역협력팀장 양광석(044-203-4418) 사무관 윤태선(4452)

군 산 시 청 : 투자유치계장 황관선(063-454-2731)

세종특별자치시청: 기업유치담당 김남경(044-300-4122)